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2019년 8월 30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7일, 이병도 의원 외 16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9년 8월 30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병도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화재나 그 밖의 재난·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,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·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.
  -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참조

다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### 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, 소방공무원이 각종 소방현장 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시장에게 그에 대한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토록 책무를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.

[표 1] 본 조례 관련 현행 및 개정안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
④ (생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## ■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 현황

- 최근 5년간(2014~2019)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([표 2] 참조), 2명의 순직자와 479명의 공상자(현장활동 266명, 교육훈련 53명, 기타 160명)가 발생하였으며 공상자 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.

[표 2]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 현황(2014~2019)

(2019.8.1. 기준)

구분	계	순 직			공 상									
		소계	현장 활동	기타	소계	원 인 별			정 도 별					
						현장 활동	교육 훈련	기타	4주 미만	8 주 미만	12 주 미만	16주 미만	16주 이상	
계	481	2	0	2	479	266	53	160	65	40	191	65	118	
2019	41	0	0	0	41	16	3	22	8	5	16	5	7	
2018	143	0	0	0	143	83	13	47	3	3	65	28	44	
2017	136	0	0	0	136	69	10	57	39	30	28	10	29	
2016	54	1	0	1	53	25	11	17	11	0	32	2	8	
2015	58	0	0	0	58	42	6	10	3	2	33	10	10	
2014	49	1	0	1	48	31	10	7	1	0	17	10	20	

## 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제3조제4항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한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’는 조항을 본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인용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다음 [표 3]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조례 제3조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인용하고 있는데 2019.3.28.일 현행 조례 제정 당시 법 제3조제4항이 생략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 정비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[표 3] 안 제3조 관련 현행 조례와 상위법 비교

현행 조례 제3조	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	비고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(이하 "소방공무원"이라 한다)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b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현행 조례 제3조에는 법 제3조제4항을 인용하지 않고 있음</p>

- **현행 조례 제8조1)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에서는 소방활동**

- 1) 『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』 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·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·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

동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,

-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미 일부 시행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, 다만 본 개정안을 통해 시장의 책무가 보다 강화될 수 있어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

**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**

**7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---

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·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홍성룡, 송아량, 이정인,  
김화숙, 우형찬, 이영실, 송재혁,  
김동식, 김용연, 김상훈, 유 용,  
김태수, 김제리, 오한아, 정진술,  
성흠제 의원 (1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화재나 그 밖의 재난·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,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·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.
-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